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0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30.)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추가(제5조제1호 신설)됨에 따라, 용자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6조에 위 제5조제1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추가(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8. 24.~ 9. 1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정하진(☎2133-3517)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 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이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노동자·계층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 포함)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u>&lt;신 설&gt;</u></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 ----- -----.</p> <p>1. <u>제5조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u></p> <p>가. <u>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u></p> <p>나. <u>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이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노동자·계층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 포함)</u></p> <p>다.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u></p> <p>라.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u></p> <p>마.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u></p>	<p>1.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5조)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22.12월)사항을 용자 또는 보조대상(제6조)에 반영을 하는 조례개정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작성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 기후환경정책과 정하진(02-2133-3517)